

# 학원 국영수과외 전면허용

## 교육부 입법예고 유치원 포함 시설기준 대폭완화

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생에서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학원이나 과외교습소에서의 국어·영어·수학 등 일반교과목 과외교습이 전면 허용된다.

학원의 시설기준도 크게 완화돼 강의실 면적기준 등이 하향조정되도록 법률로 명시하게 된다.

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'학원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' 개정안을 입법에 고했다.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유치원·국교·중학생에게 예능·기술 등 정규과목 이외의 과목들만 과외교습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국어·영어·수학(산수) 등 일반과목의 과외교습도 허용된다.

과외교습에 대한 교육부의 이런 정책전환은 이제까지의 규제위주에서 자율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, 입시 위주의 현 교육풍토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.

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·도별 조례에 따라 서울·부산처럼 일반과목 교습이 가능한 입시계 학원의 최소 기준면적이 3백평으로 규정돼 이 기준을 따를 수 없는 영세 웅변·속셈학원들이 인가과목 외의 일반과목들을 불법교습해왔으나 앞으로는 법률로 조례규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소규모 학원들의 일반과목 과외교습이 사실상 양성화된다.

이에 따라 강의실 기준면적은 최소 10평으로 돼 있는 현행 시행령 규정면적에 준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9평 이하의 교습실을 상대로 한

과외교습소는 과목제한은 없되 교습소 운영자가 1개 신고과목을 직접 교습해야 한다.

학원강사는 학원교습 외의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현직 교사나 대학생의 기업성 과외는 계속 금지된다.

교육부는 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과 유해업소의 기본거리는 현행기준(6m 이상)을 유지하되 위험물 취급소, 소음·먼지가 심한 업소 등은 상당한 거리를 두

도록 했다. 수강료는 지금까지 주무관청이 기준을 정하고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나,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.

교육부는 특히 지금까지 학원을 문리·기술·예능·가정·사무·독서 등 6개 계열로 분류, 한정해왔으나 이것이 산업사회의 변화에 응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들 계열 외에 새로

운 계열을 교육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.

또 과외교습 허용범위도 지금까지의 '동일호적 내의 친족'으로 제한했던 것을 완화해 삼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교습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.

교육부는 앞으로 시·도교육청 학원업무 관계관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.



### 단속강의

서울·경기지역 속셈·주산학원 등 소규모 학원 관계자 5천여명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둔치 야외무대 앞터에 모여 경찰의 과잉단속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. 교육부는 이날 이들 소규모 학원에 일반교과목의 과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학원설립·운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

이준하 기자